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500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신성범 · 조은희 · 김예지
이성권 · 박덕흠 · 최수진
이인선 · 서천호 · 엄태영
김태호 · 안철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선거관리 사무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이 고쳐지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반복적 행정 실수와 도덕적 해이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의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 역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9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감찰) ①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감찰을 행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감찰의 결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제24조”를 “제24조 또는 제24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찰을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 |
|---|---|
| <p>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p> <p>1. 회계관계직원 및 <u>제24조</u>에 따라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p> <p>2. (생략)</p> <p>② (생략)</p> | <p>----- -----.</p> <p>1. -----<u>제24조</u> 또는 <u>제24조의2</u>-----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